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조속한 심판 촉구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10일 법에 규정된 그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2일 박근혜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있습니다.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심판결정이 지연 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9. 10. 1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기섭